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III. 경영참고사항 .....	7
1. 사업의 개요.....	7
가. 업계의 현황 .....	7
나. 회사의 현황 .....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1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1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5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61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61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62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62
※ 참고사항.....	62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3월 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원  
대 표 이 사 :            육현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순화동)  
                              (전 화)1588-3112  
                              (홈페이지)<http://www.s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그룹장            (성 명)신재형  
                              (전 화)02)2131-8366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2기 정기)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상범 (출석률: 100%)	김영걸 (출석률: 88%)	코마츠자키 츠네오 (출석률: 88%)	사토 사다히로 (출석률: 88%)
			찬 반 여부			
1차	2018.01.25	제4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41기 재무제표(개별 및 연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해외 지정 설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차	2018.02.22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차	2018.03.2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별 이사보수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차	2018.05.10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참석	불참	참석	참석
5차	2018.07.26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외 지정 폐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외 지정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차	2018.08.29	해외 지정 설치의 건	찬성	찬성	불참	찬성
7차	2018.10.30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차	2018.12.26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경영위원회	육현표 위원장 박준성 위 원	2018.01.03	2018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여신한도 재약정의 건	가결
		2018.01.12	지정 추가 설치의 건	가결
		2018.01.30	4기 장기성과인센티브 2차년도 지급의 건	가결
		2018.02.07	지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8.04.18	여신 및 신용공여 한도 재약정의 건	가결
		2018.07.11	말레이시아 KL118타워 입찰 보증보험 증권 발행의 건	가결
			싱가포르 SLNG 프로젝트 유보금 환급 보증증권 발행의 건	가결
		2018.08.08	지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8.08.24	지정 변경 승인의 건 공장 등록 변경 승인의 건
		2018.09.21	지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8.12.12	사우디 타다울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외화지급보증(한도) 약정의 건	가결
지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보상위원회	이상범 위원장	2018.02.22	'18년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임석우 위 원 박준성 위 원			
내부거래 위원회	이상범 위원장 김영걸 위 원 박준성 위 원	2018.03.2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18.05.10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사전심의의 건	가결
		2018.07.26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사전심의의 건	가결
		2018.10.30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거래 사전심의의 건	가결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사전심의의 건	가결
2018.12.26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 사전심의의 건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2)	10,000	156	78	-

※ ( )는 기타비상무이사 수입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보안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8.03.01~2018.12.31	1,046	6.7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2018.01.01~2018.12.31	598	3.8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사)	2018.01.01~2018.12.31	277	1.8
퇴직연금불입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2018.01.01~2018.12.31	245	1.6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8.04.01~2018.12.31	236	1.5
기기구매	삼성전자 (계열사)	2018.01.01~2018.12.31	230	1.5
보안용역매출	삼성디스플레이 (계열사)	2018.03.01~2018.12.31	230	1.5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8.01.01~2018.12.31	223	1.4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8.05.01~2018.12.31	220	1.4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8.01.01~2018.12.31	200	1.3
보안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8.01.01~2018.02.28	177	1.1
부동산임대차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2018.01.01~2018.12.31	177	1.1

※ 상기 비율은 2017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2018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상기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회사와의 관계)				
삼성전자 (계열사)	용역매출 등	2018.01.01~2018.12.31	3,478	22.4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용역매출 등	2018.01.01~2018.12.31	1,064	6.8

- ※ 상기 비율은 2017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 ※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2018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국가, 기업, 개인의 유·무형 자산 및 인적자원의 안심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성이 큰 산업으로 기계경비, 보안SI로 구분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무선 통신 및 IT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경험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기계경비는 주택이나 금융기관, 상점 등에 침입, 도난, 화재와 같은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각종 감지기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이상 발생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발생 시 출동요원의 긴급대처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 통보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보안 SI는 빌딩, 공장, 학교 등 고객 시설물의 특징, 목적 및 환경에 따라 출입관리, CCTV 등 각종 보안 시스템과 솔루션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 ·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일 빌딩의 보안시스템 설치에서 GOP, 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 인프라 구축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서비스 사업은 건물 통합관리 솔루션 사업으로 시설관리 중심의 FM(Facility Management)사업, 건물 자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PM(Property Management)사업 및 에너지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M사업은 시설운영, 유지보수, 보안, 미화, 주차, 안내 등 건물 시설관리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PM사업은 건물의 예산 수립 및 관리, 임대차관리, 빌딩 운영수익 향상방안 수립, 부동산 운영 리스크 관리, 투자 자문, 기타 수입관리 등을 통해 고객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 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사업과 성과보증 기반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운영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아직 국내는 시장 개화 단계이나 향후 관련 정책 강화 및 시장의 니즈 확대에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테러, 기업정보 유출 등 위협요인 증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안심·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물리·정보 보안의 융합화에 따른 기회요인 확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국내 보안서비스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및 내수 침체 등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안제품시장은 고화질, IP카메라로의 영상장비 교체수요와 사회적 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통합관제센터 및 생체인식 도입 확대, 홈 IoT 확산에 따른 가정용 영상시장 개척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보안시장은 인공지능, IoT, Big data 등 기술의 발전과 他 산업과의 융·복합화 추세 등으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응용 스펙트럼이 넓고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산업으로서 向後 4次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친 IoT 도입과 AI로 인한 무인화/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원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제어, 긴급 대처, 사용자 인증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총 빌딩 수는 주택용, 상업용, 공업용, 문화사회용 기타 용도로 7,191,912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건물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6층 이상 고층건물은 204,376동으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건물의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와 대형건물,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능형 빌딩시스템)의 등장으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며 내수 경기 위축 및 경쟁사의 지속적인 저가 영업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사업은 내수업종으로 건설경기변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1~3년 정도의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사업입니다.

### (4) 경쟁요소

##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의 경쟁요소로는 첨단기술, 서비스 인력, 인프라, 운영 노하우 및 관제 역량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대의 보안전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으로 영국 CPNI(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의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성능 인증을 획득한 지능형 영상분석 알고리즘, 2016년 장영실상을 수상한 3D 기반의 지능형 행동분석 기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얼굴인식 기술, 군용 레이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민간 분야에 적용한 UWB(Ultra Wide Band) 레이더 기반의 침입 감지 기술 등 보안분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관할하는 서비스 거점과 영업 및 출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시큐리티 전문 연수원을 통해 정예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서비스 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4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구축한 통합관제 센터를 수원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 시 상호 백업 가능한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서비스의 경쟁요인은 우수한 인적역량과 사업수행 경험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입니다. 건물관리 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화된 인력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고 다변화된 시장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계 핵심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인력양성 로드맵과 교육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인적 역량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조직을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원격 감시 사업장의 점진적 확대와 연구·개발로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차별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당사의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규로서 '경비업법(1976년 제정)'이 있으며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규로서 '건설산업기본법(1958년 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와 건물관리 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종합 안심솔루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아래 수익 기반의 시장 지배력 확대, 고객 중심 경영, 운영 효율화, 프로세스·시스템 혁신, 신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내수 경기 위축 및 저성장 장기화 추세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제품
보안시스템 서비스	최첨단 보안시스템/서비스 제공, 통합보안, 안전상품 판매 등
건물관리 서비스	부동산 시설 및 수익관리, 컨설팅 등

(2) 시장의 특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은 사무실, 점포 등 상업용과 공공기관이 주요 시장이며,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영상기기 보급 확대 및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IP기반 제품 및 지능형 영상분석S/W 등을 개발하여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서비스 사업은 대기업 계열의 업무용 대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FM (Facility Management) 서비스 위주에서 시장 개방 및 국민소득 증대, 투자시장 다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병원·연수시설·리테일 등 대상물건의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국계 투자사 등 고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임대차·신축 설계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14년 1월 10일 삼성에버랜드(現 삼성물산)으로부터 건물관리사업 부문(現 BE사업부)을 양수하여 사업부문간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4) 조직도

대표이사									
S E 사 업 부	B E 사 업 부	S P 사 업 부	응 합 보 안 연 구 소	고 객 지 원 실	경 영 지 원 실	인 재 개 발 원	안 전 품 질 팀	준 법 경 영 팀	감 사 팀

※ 전사 조직도는 2018.12.31일 기준입니다.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제4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연결현금흐름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식·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자본변동표·현금  
흐름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 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2 기 (2018. 12. 31 현재)

제 41 기 (2017. 12. 31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6,615	5,753
Ⅱ. 비유동자산	10,214	10,062
자산총계	16,829	15,815
부 채		
Ⅰ. 유동부채	3,061	2,928
Ⅱ. 비유동부채	1,145	809
부채총계	4,206	3,737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12,623	12,078
Ⅰ. 자본금	190	190
Ⅱ. 주식발행초과금	1,929	1,929
Ⅲ. 이익잉여금	12,030	11,485

IV. 기타자본항목	(1,526)	(1,526)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12,623	12,078
부채와자본총계	16,829	15,815

(나)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1. 매출액	20,183	19,423
2. 매출원가	14,712	13,760
3. 매출총이익	5,471	5,663
4. 판매비와 관리비	3,480	3,637
5. 영업이익	1,991	2,026
6. 기타영업외수익	142	142
7. 기타영업외비용	208	288
8. 금융수익	63	35
9. 금융비용	2	1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86	1,914
11. 법인세비용	956	481
12. 당기순이익	1,030	1,433
지배기업소유지분	1,030	1,433
비지배지분		

(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당기순이익	1,030	1,433
II. 기타포괄손익	(167)	6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67)	71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 해외사업환산손익		(3)
Ⅲ. 당기총포괄손익	863	1,501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63	1,501
2. 비지배지분		

(라)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단위 : 억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소계		
2017.1.1 (전기초)	190	1,929	10,404	(1,523)	11,000		11,000
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1,433		1,433		1,433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재측정요소			71		71		71
4. 해외사업환산손익				(3)	(3)		(3)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423)		(423)		(423)
2. 종속기업지분증권의 취득							
2017.12.31 (전기말)	190	1,929	11,485	(1,526)	12,078		12,078
2018.1.1 (당기초)	190	1,929	11,485	(1,526)	12,078		12,078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527		527		527
수정 후 자본	190	1,929	12,012	(1,526)	12,605		12,605
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1,030		1,030		1,03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67)		(167)		(167)
4. 해외사업환산손익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845)		(845)		(845)
2. 종속기업지분증권의 취득							
2018.12.31 (당기말)	190	1,929	12,030	(1,526)	12,623		12,623

(마) 연결 현금흐름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2,370	2,94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295	3,430
2. 이자의 수취	55	23
3. 배당금의 수취	2	1
4. 법인세 납부액	(982)	(512)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1,762)	(2,247)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845)	(423)
IV. 현금흐름의 외화환산차이		(2)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 + II + III + IV)	(237)	270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	1,441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4	1,711

(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 1.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과 주식회사 휴먼티에스에스 등 7개의 종속회사(이하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0년 9월 일본SECOM주식회사의 출자로 합작투자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일본SECOM(주)(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합계 20.57%)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1 종속기업 현황

가. 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소재국	2018.12.31		2017.12.31		결산월	업 종
		지배지분율	비지배지분율	지배지분율	비지배지분율		
(주)휴먼티에스에스	대한민국	100.00%	-	100.00%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에스원씨알엠(주)	대한민국	100.00%	-	100.00%	-	12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중국	100.00%	-	100.00%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SOCM LLC	몽골	100.00%	-	100.00%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베트남	100.00%	-	100.00%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99.00%	1.00%	99.00%	1.00%	12월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S-1 CORPORATION HUNGARY LLC(*)	헝가리	100.00%	-	-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 당기 중 S-1 CORPORATION HUNGARY LLC 주식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나.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회 사 명	2018.12.31		2017.12.31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휴먼티에스에스	27,880,355,698	24,018,285,345	21,879,663,405	19,617,447,026
에스원씨알엠(주)	3,193,243,459	1,910,672,985	6,107,251,904	1,501,768,244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12,021,394,671	7,611,025,761	9,454,139,017	5,886,829,863
SOCM LLC	108,090,578	2,061,516	164,723,930	20,087,572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3,178,310,151	786,024,927	3,265,662,583	1,946,498,270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780,444,621	65,653,652	968,903,723	65,213,652
S-1 CORPORATION HUNGARY LLC	1,475,890,972	1,458,149,021	-	-

회 사 명	2018년			2017년		
	매출액	당기손익	당기포괄손익	매출액	당기손익	당기포괄손익
(주)휴먼티에스에스	129,918,909,436	3,247,141,754	1,599,853,974	115,086,913,834	859,699,207	1,565,370,619
에스원씨알엠(주)	11,491,085,182	(13,923,932)	(322,853,186)	10,721,948,500	271,979,795	205,226,131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22,152,536,601	881,695,602	881,695,602	14,550,280,089	1,073,784,834	1,073,784,834
SOCM LLC	34,589,535	(34,320,981)	(34,320,981)	224,515,446	8,680,848	8,680,848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5,910,908,334	1,036,498,882	1,036,498,882	3,731,553,028	263,469,786	263,469,786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1,773,873	(208,899,102)	(208,899,102)	3,835,204	(96,309,929)	(96,309,929)
S-1 CORPORATION HUNGARY LLC	1,237,762,399	(8,937,029)	(8,937,029)	-	-	-

## 1.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S-1 CORPORATION HUNGARY LLC 주식을 신규 취득하여, 연결대상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정된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의 성격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몇몇의 다른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18년에 최초로 적용되지만,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금융상품 회계의 세가지 측면, 즉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모두를 통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a)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나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분류는 두 가지 기준, 즉 자산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대한 평가는 2018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전적으로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고 원금 및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채무상품으로 분류됨

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채무상품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채무상품은 출자금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상장 회사 및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지분상품으로 지정되어 분류 및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간 이러한 투자를 보유하고자 할 때 이 범주에 속하는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투자를 취소 불가능하게 분류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어떠한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분류 및 측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한 주요 금융상품의 기초 분류변경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측정 범주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7,430,422,746	-	117,430,422,746	-
단기금융자산	208,406,870,630	-	208,406,870,630	-
미수수익	1,608,464,780	-	1,608,464,780	-
장기금융자산	7,000,000	-	7,000,000	-
대여금및수취채권(비유동)	51,381,313,832	-	51,381,313,832	-
매도가능금융자산				
상장주식	5,541,016,820	-	-	5,541,016,820
비상장주식	258,718,957	-	-	258,718,957
채무상품	492,071,210	492,071,210	-	-
합계	385,125,878,975	492,071,210	378,834,071,988	5,799,735,777

(b)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접근방식을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신용손실(ECL) 접근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회계 처리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연결회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이 아닌 모든 채무상품과 계약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을 인식 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제한된 예외사항들과 함께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

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할 때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공시사항을 요구합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는 새로운 기준서를 최초적용일 현재의 모든 계약에 대해 혹은 최초적용일 현재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에서 조정됩니다. 따라서 비교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로 그리고 관련 해석서에 따라 보고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으로 인한 2018년 1월 1일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 원)

구분	증감금액
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563,785,588)
계약자산	30,563,785,588
장기계약자산	3,297,215,546
장기선급비용	99,724,419,842
이연법인세자산	(16,837,608,002)
총자산	86,184,027,386
부채	
장기선수수익	33,444,742,821
총부채	33,444,742,821
자본순효과	52,739,284,565
이익잉여금	52,739,284,565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과 그 시점에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은 연결회사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번째 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의해 작성된 금액을 표시하며, 두번째 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표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적용 기준서		증감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이전 기준서	
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3,049,402,192	154,216,678,561	(31,167,276,369)
계약자산	32,744,472,801	-	32,744,472,801
선급비용	58,354,500,588	4,733,377,629	53,621,122,959
유동자산 합계	214,148,375,581	158,950,056,190	55,198,319,391
장기계약자산	2,179,596,450	-	2,179,596,450
장기선급비용	47,768,119,840	4,510,082	47,763,609,758
이연법인세자산	2,945,132,188	20,665,761,758	(17,720,629,570)
비유동자산 합계	52,892,848,478	20,670,271,840	32,222,576,638
자산 총계	267,041,224,059	179,620,328,030	87,420,896,029
부채			
선수수익	15,667,922,711	-	15,667,922,711
유동부채 합계	15,667,922,711	-	15,667,922,711
장기선수수익	16,247,860,864	-	16,247,860,864
비유동부채 합계	16,247,860,864	-	16,247,860,864
총부채	31,915,783,575	-	31,915,783,575
자본			
이익잉여금	235,125,440,484	179,620,328,030	55,505,112,454
자본총계	235,125,440,484	179,620,328,030	55,505,112,454
부채와 자본총계	267,041,224,059	179,620,328,030	87,420,896,029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서		증감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이전 기업회계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870,427,389	-	2,015,870,427,389
재화판매	-	4,379,654,662	(4,379,654,662)
용역제공	2,468,843,432	2,012,430,656,913	(2,009,961,813,481)
수익	2,018,339,270,821	2,016,810,311,575	1,528,959,246
매출원가	(1,471,226,712,524)	(1,472,887,025,399)	1,660,312,875
매출총이익	547,112,558,297	543,923,286,176	3,189,272,121
판매비와관리비	(347,984,428,593)	(348,444,005,929)	459,577,336
영업이익	199,128,129,704	195,479,280,247	3,648,849,457
기타손익	(566,210,621)	(566,210,62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8,561,919,083	194,913,069,626	3,648,849,457
법인세비용	(95,593,144,489)	(94,710,122,921)	(883,021,568)
당기순이익	102,968,774,594	100,202,946,705	2,765,827,889

조정사항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행의무 식별

연결회사의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은 서비스용역과 함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용역은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b) 거래가격 산정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그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합니다.

(c) 기타

연결회사는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며, 미래 수행의무 이행시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일부 서비스는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영업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이러한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로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리스계약과 기초자산의 가치가 소액인 리스계약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소액리스로 간주되는 사무용 기기(예를 들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상세 영향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34,203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33,694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1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33,694백만원, 33,694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이 개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 제도의 정산,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전, 후의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 잔여 연차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

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에 적용되지않으며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연결회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특정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2015 - 2017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3 연결

### 가.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 나. 사업결합 및 영업권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2.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 2.5 외화환산

###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회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경보기기	5년
구 축 물	5~25년	경보설비	5년
차 량 운 반 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 2.9 무형자산

### 가.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3)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나.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 라.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 마.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 2.11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 가. 금융자산

#####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회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상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다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다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 (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 나. 금융부채

#####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 (2) 후속측정

######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분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 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 2.12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총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3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 2.14 종업원 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 2.15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 2.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 가.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회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 나.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 계약잔액

####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2)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11 부분을 참조합니다.

####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

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 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17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 2.19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1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 추정과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연결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

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결회사는 경비기기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주석 13 참조)

#### 라.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회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매 결산일에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는 주석 10에 공시됩니다.

####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바.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5참조).

#### 사.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5참조). 연결회사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다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별도 재무제표

### (가)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제 42 기 (2018. 12. 31 현재)

제 41 기 (2017. 12. 31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6,251	5,461
Ⅱ. 비유동자산	10,209	10,099
자산총계	16,460	15,560
부 채		
Ⅰ. 유동부채	2,834	2,760
Ⅱ. 비유동부채	1,068	787
부채총계	3,902	3,547
자 본		
Ⅰ. 자본금	190	190
Ⅱ. 주식발행초과금	1,929	1,929
Ⅲ. 이익잉여금	11,958	11,413
Ⅳ. 기타자본항목	(1,519)	(1,519)
자 본 총 계	12,558	12,013
부채와자본총계	16,460	15,560

### (나)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1. 매출액	19,983	19,300
2. 매출원가	14,528	13,616
3. 매출총이익	5,455	5,684
4. 판매비와관리비	3,528	3,681
5. 영업이익	1,927	2,003
6. 기타영업외수익	169	140
7. 기타영업외비용	205	287
8. 금융수익	60	33
9. 금융비용	2	1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49	1,888
11. 법인세비용	938	478
12. 당기순이익	1,011	1,410

(다)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당기순이익	1,011	1,410
II. 기타포괄손익	(148)	6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순확정금융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48)	6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III. 당기총포괄손익	863	1,474

(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073	2,228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83	754

2.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527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48)	64
4. 당기순이익	1,011	1,41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545	1,545
1. 임의적립금	700	700
2.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845	845
제42기 : 2,500원(500%)		
제41기 : 2,500원(5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28	683

※ 제42기(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41기(전기) 처분확정일: 2018년 3월 21일).

(마)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

(단위  
: 억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총 계
2017.1.1 (전기초)	190	1,929	10,362	(1,519)	10,962
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1,410		1,410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64		64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423)		(423)
2017.12.31 (전기말)	190	1,929	11,413	(1,519)	12,013
2018.1.1 (당기초)	190	1,929	11,413	(1,519)	12,013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527		527
수정 후 자본	190	1,929	11,940	(1,519)	12,540
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1,011		1,011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48)		(148)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845)		(845)
2018.12.31 (당기말)	190	1,929	11,958	(1,519)	12,558

(바)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4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

(단위 : 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2,336	2,90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219	3,390
2. 이자의 수취	51	21
3. 배당금의 수취	32	1
4. 법인세 납부액	(966)	(507)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1,746)	(2,257)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845)	(423)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 + II + III)	(255)	22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93	1,268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38	1,493

(사)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

## 1.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라 함)은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0년 9월 일본SECOM주식회사의 출자로 합작투자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일본SECOM(주)(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 합계 20.5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정된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의 성격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몇몇의 다른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18년에 최초로 적용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금융상품 회계의 세가지 측면, 즉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모두를 통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않았습니다.

#### (a)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나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분류는 두 가지 기준, 즉 자산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 금융 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모형에 대한 평가는 2018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전적으로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의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고 원금 및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채무상품으로 분류됩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채무상품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회사의 채무상품은 출자

금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상장 회사 및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지분상품으로 지정되어 분류 및 측정됩니다. 회사는 당분간 이러한 투자를 보유하고자 할 때 이 범주에 속하는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투자를 취소 불가능하게 분류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분류 및 측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한 2018년 1월 1일의 주요 금융상품의 분류변경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측정 범주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6,266,874,023	-	116,266,874,023	-
단기금융자산	204,406,870,630	-	204,406,870,630	-
미수수익	1,571,288,475	-	1,571,288,475	-
장기금융자산	7,000,000	-	7,000,000	-
대여금및수취채권(비유동)	49,796,010,484	-	49,796,010,484	-
매도가능금융자산				
상장주식	5,541,016,820	-	-	5,541,016,820
비상장주식	258,718,957	-	-	258,718,957
채무상품	492,071,210	492,071,210	-	-
합계	378,339,850,599	492,071,210	372,048,043,612	5,799,735,777

(b)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접근방식을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신용손실(ECL) 접근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회계 처리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회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이 아닌 모든 채무상품과 계약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제한된 예외사항들과 함께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할 때 관련된 모든 사

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공시사항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는 새로운 기준서를 최초적용일 현재의 모든 계약에 대해 혹은 최초적용일 현재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에서 조정됩니다. 따라서 비교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로 그리고 관련 해석서에 따라 보고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으로 인한 2018년 1월 1일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증감금액
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563,785,588)
계약자산	30,563,785,588
장기계약자산	3,297,215,546
장기선급비용	99,724,419,842
이연법인세자산	(16,837,608,002)
총자산	86,184,027,386
부채	
장기선수수익	33,444,742,821
총부채	33,444,742,821
자본순효과	52,739,284,565
이익잉여금	52,739,284,565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과 그 시점에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은 회사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번째 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의해 작성된 금액을 표시하며, 두번째 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표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적용 기준서		증감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이전 기준서	
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8,246,387,485	150,615,103,602	(32,368,716,117)
계약자산	33,945,912,549	-	33,945,912,549
선급비용	58,197,455,152	4,576,332,193	53,621,122,959
유동자산 합계	210,389,755,186	155,191,435,795	55,198,319,391
장기계약자산	2,179,596,450	-	2,179,596,450
장기선급비용	47,763,609,758	-	47,763,609,758
이연법인세자산	272,397,971	17,993,027,541	(17,720,629,570)
비유동자산 합계	50,215,604,179	17,993,027,541	32,222,576,638
자산 총계	260,605,359,365	173,184,463,336	87,420,896,029
부채			
선수수익	15,667,922,711	-	15,667,922,711
유동부채 합계	15,667,922,711	-	15,667,922,711
장기선수수익	16,247,860,864	-	16,247,860,864
비유동부채 합계	16,247,860,864	-	16,247,860,864
총부채	31,915,783,575	-	31,915,783,575
자본			
이익잉여금	228,689,575,790	173,184,463,336	55,505,112,454
자본총계	228,689,575,790	173,184,463,336	55,505,112,454
부채와 자본총계	260,605,359,365	173,184,463,336	87,420,896,029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서		증감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이전 기업회계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995,851,174,373	-	1,995,851,174,373
재화판매	-	4,379,654,662	(4,379,654,662)
용역제공	2,468,843,432	1,992,411,403,897	(1,989,942,560,465)
수익	1,998,320,017,805	1,996,791,058,559	1,528,959,246
매출원가	(1,452,806,877,775)	(1,454,467,190,650)	1,660,312,875
매출총이익	545,513,140,030	542,323,867,909	3,189,272,121
판매비와관리비	(352,784,275,735)	(353,243,853,071)	459,577,336
영업이익	192,728,864,295	189,080,014,838	3,648,849,457
기타손익	2,218,859,195	2,218,859,19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4,947,723,490	191,298,874,033	3,648,849,457
법인세비용	(93,878,144,090)	(92,995,122,522)	(883,021,568)
당기순이익	101,069,579,400	98,303,751,511	2,765,827,889

조정사항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행의무 식별

회사의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은 서비스용역과 함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용역은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b) 거래가격 산정

회사는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그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합니다.

#### (c) 기타

회사는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며, 미래 수행의무 이행시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일부 서비스는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영업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이러한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로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회사는 최초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리스계약과 기초자산의 가치가 소액인 리스계약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회사는 소액리스로 간주되는 사무용 기기(예를 들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상세 영향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33,506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33,011백만원입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1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33,011백만원, 33,011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채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이 개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 제도의 정산,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전, 후의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 잔여 연차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 인식상한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으며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회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특정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5 - 2017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 2.5 외화환산

###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회사의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경보기기	5년
구 축 물	5~25년	경보설비	5년
차 량 운 반 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 2.9 무형자산

### 가.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3)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나.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 라.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 마.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 2.11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 가. 금융자산

####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이 범주는 회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상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다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다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

하기 전에는 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 나. 금융부채

###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 (2) 후속측정

####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분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 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 2.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 2.14 종업원 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



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인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 2.15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 2.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 가.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회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회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 나. 용역의 제공

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 계약잔액

###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2)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무조건적인 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11 부분을 참조합니다.

###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 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17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 2.19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9년 1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익인식

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유형자산 내용연수

회사는 경비기기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 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석 14 참조)

#### 라.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

타내지 않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는 주석 10에 공시됩니다.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6참조).

사.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6참조).회사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다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회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b>제7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b>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p>	<p><b>제7조 (주식의 종류)</b>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p>

<p>&lt;신설&gt;</p>	<p><b>제7조의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p> <p>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의 전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근거 신설</p>
<p><b>제8조 (명의개서대리인)</b></p> <p>①~② 생략</p> <p>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④ 생략</p>	<p><b>제8조 (명의개서대리인)</b></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p> <p>④ 현행과 동일</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 내용 반영</p>
<p>제8조의2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8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b>제8조의2 (삭제)</b></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 내용 반영</p>
<p><b>제10조 (신주인수권)</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약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4. 생략</p>	<p><b>제10조 (신주인수권)</b></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삭제</p> <p>4. 현행과 동일</p>	<p>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p>
<p><b>제11조 (주권의 재발행)</b></p> <p>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은 후 그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주권재발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p>	<p><b>제11조 (삭제)</b></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p>
<p><b>제23조 (이사회)</b></p> <p>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결정한 것을 제외한 회사의 중요업무를 의결한다.</p>	<p><b>제23조 (이사회)</b></p> <p>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이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구 정비</p>
<p>&lt;신설&gt;</p>	<p><b>제35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p> <p>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 발행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전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근거 신설</p>
<p>&lt;신설&gt;</p>	<p><b>제3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b></p> <p>제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p>

<신설>	부 칙 (2019.3.2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35조, 제36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일을 별도 규정하는 단서 신설
------	---	--------------------------

##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석우	1961.11.10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김영걸	1953.05.27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나카다 타카시	1966.04.27	기타비상무이사	임원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임석우	(주)에스원 BE사업부장	· (주)에스원 경영지원실장 · (주)에스원 SE사업부장 · 現 (주)에스원 BE사업부장(부사장)	없음
김영걸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現 (주)에스원 사외이사	없음
나카다 타카시	세콤(주) 집행임원	· 세콤(주) 본사 종합기획 담당과장 · 세콤(주) 본사 종합기획부장 · 現 세콤(주) 집행임원	없음

## □ 감사의 선임

###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윤환	1953.11.23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윤환	(주)에스원 상근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경무기획국장</li> <li>· 인천지방경찰청장</li> <li>· 경찰공제회 사업관리이사</li> <li>· 現 (주)에스원 상근감사</li> </ul>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명(2명)	8명(2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억원	100억원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제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2명	2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억원	5억원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